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3호 2018. 7. 27(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8- 88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 1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8- 38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 ----- 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청 고시 제2018 - 88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위치 : 남원시 갈치동 산52번지 외 1필지
2. 사업목적 : 태양광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
3. 공사개요 : 연장 L=312.0m, 폭 B=4.0m (Con`c 포장)
4. 공사시행기간 : 2018. 08. ~ 2019. 07.
5. 공사실시방법 :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
6. 허가기관 : 남원시청
7. 허가년월일 : 2018. 07. 23.
8. 피허가자의 주소·성명 : 이종기 (남원시 중갈치안길 20)
9. 기타사항 :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

2018년 7월 27일

남 원 시 장

공고 제2018-38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일괄준용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안 제1조)
-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마련 (안 제2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31-5931),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leeyh413@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보건지원과 담당자 이영희(전화 : 063-620-79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07.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건지원과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안 제1조)
-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마련 (안 제2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7. . ~ 2018. 07.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부터 다시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